제351회 임시회
2015. 10. 07.(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7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계획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7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6년 9월 27일

○ 회부일자 : 2016년 9월 28일

3. 제안이유

○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 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1 출연목적

○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08. 2. 20), 장학금 지원, 차세대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 출연 예정금액 : 620백만원(도비100%)

○ 출연근거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제8조

○ 산출근거

- 기관운영비 : 440백만원(인건비 및 경상비)
- 충북학사 수입금 : 180백만원(수도권장학금)

□ **출연계획** (단년·반복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보조율)	2016년			2017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도비(100%)	620,000	620,000	0	620,000	0

5. 검토의견

□ 법적 근거 및 계획안의 내용

○ 본 계획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고,

○ 동 계획안의 출연금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및 같은 법 제20조(재정지원),「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제7조(기금의 조성) 및 같은 법 제8조(출연)에 따라 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출연금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출연계획안의 법적인 제출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임.

□ 검토결과

○ 2008년 2월 설립된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충북의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재단운영을 위해 예산을 출연하려는 것은 적정함.

○ 다만, 충북인재양성재단은 비영리 법인으로 자체수입이 고정된 만큼 경영합리화 노력이 필요할 것임.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출연금	45,225	5,000	5,700	6,100	5,000	5,550	5,745	5,780	5,730	620

참고① 충북인재양성재단 기본현황

❑ 설립개요

○ 목　　적 : 국가와 지역 발전을 선도할 인재 발굴, 양성 및 관리

○ 근　　거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설 립 일 : 2008. 2. 20

○ 정　　원 : 5명(사무국장, 직원 4)

○ 설립형태 : 민법 제32조에 의한「재단법인」

○ 기금적립액 : 775억원(2016. 8월말 기준)

※ 2016년부터 도(50억) 및 시·군(35억) 출연금 중단

⇒ 기금 이자는 사업비로 운영하고 도에서 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4.4억원)

❑ 기금누계 : 77,538백만원

('16. 8월말 기준, 단위:백만원)

년도	수입								지출 (사업비)	잔액
	도 출연금	시·군 출연금	문정	청풍	도민 기탁금	이자 (법인세 포함)	기타 수입	계		
계	43,425	28,000	545	3,014	6,541	10,977	475	92,977	15,439	77,538
2008	5,000	3,500	545	3,014	1,950	55	-	14,064	1,353	12,711
2009	5,000	3,500	-	-	1,107	701	-	10,308	1,970	8,338
2010	5,000	3,500	-	-	1,245	881	-	10,626	1,875	8,751
2011	5,000	3,500	-	-	1,575	1,242	-	11,317	1,864	9,453
2012	5,550	3,500	-	-	125	1,477	5	10,657	1,668	8,989
2013	5,745	3,500	-	-	142	1,782	-	11,169	1,865	9,304
2014	5,780	3,500	-	-	202	1,534	-	11,016	1,944	9,072
2015	5,730	3,500	-	-	145	2,305	13	11,693	1,938	9,755
2016	620	-	-	-	50	1,000	457	2,127	962	1,165

참고② 장학금 지원 실적(2008~2016) 및 2017년 계획

구 분	계	사업규모(명)					계	소요액(백만원)				
		'08 ~13	'14	'15	'16	'17		'08 ~'13	'14	'15	'16	'17
계	9,965	5,646	1,106	1,089	1,074	1,050	13,772	8,170	1,436	1,408	1,432	1,326
성 적	7,416	4,216	800	800	800	800	9,593	5,873	930	930	930	930
수도권	450	90	90	90	90	90	900	180	180	180	180	180
특 기	665	421	77	67	50	50	727	451	80	56	70	70
곰두리	223	100	30	33	30	30	214	97	29	28	30	30
로스쿨	147	84	21	21	21	-	767	452	105	105	105	-
특 지	108	46	21	18	13	10	117	81	13	10	7	6
희 망	329	222	27	20	30	30	313	215	19	19	30	30
도 내 대 학	280	120	40	40	40	40	560	240	80	80	80	80
충 북 사 랑	195	195	-	-	-	-	110	110	-	-	-	-
연 구	40	40	-	-	-	-	366	366	-	-	-	-
꿈나무	95	95	-	-	-	-	86	86	-	-	-	-
복 지	11	11	-	-	-	-	15	15	-	-	-	-
HCN	6	6	-	-	-	-	4	4	-	-	-	-

참고③ 2017년 인재양성재단 사업비 운영계획

○ 총 출연금액 : 620,000천원

(단위:천원)

단위 사업명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총 계		620,000	
기관운영비	인 건 비	236,570	
	경 상 비	164,851	
목적사업비	장학금지원	180,000	○ 수도권장학금 90명 × 2,000,000원 = 180,000,000원
예 비 비	예 비 비	30,645	○ 예비비 = 30,645원
적 립 금	적 립 금	7,934	○ 적립금 = 7,934원

○ 재단이자수익 : 1,566,816천원 ('17. 12월 말 예상, 법인세 환급금 포함)

(단위:천원)

구 분	지 출 항 목	금 액	비 고
계		1,566,816	
목적 사업비	장학금	1,140,000	
	청소년해외탐방	120,000	
	대학생재능기부	20,000	
	대학생토론경진대회	15,000	
	글로벌 인재포럼	10,000	
	충북고교 진로포럼	5,000	
	기금확충(기탁자 예우 등)	3,000	
	충북인재리더십캠프(중·고등)	23,000	
	충북인재아카데미(대학)	12,000	
	인재양성전문가포럼	4,000	
	인재관리(장학생간담회 등)	4,000	
	정보화시스템유지	10,000	
성 과 급	성과급	27,340	
사업준비금	사업준비금	173,476	

관련규정 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축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와 시·군의 출연금
2.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영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출연)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